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5.3.24.>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관련설비를 갖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선박직원	승무자격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육상정 비가능 선박	무선설비의 2중 설치 및 선상정 비가능 선박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국제항해	여객정원 250명 이상	통신장	2급 통신사 1명	1급 통신사 1명
		여객정원 250명 미만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국내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화물선	국제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국내항해		통신장	3급 통신사 또는 4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어선	500톤 이상		통신장	3급 통신사 1명	2급 통신사 1명
	500톤 미만		통신장	4급 통신사 1명	3급 통신사 1명